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①항 규정에 의거 평창군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첨부된 안과 같이 제안합니다.

2. 주요골자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취득재산은 경로당 신축 2동(수항리, 유포리) 166㎡,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부지 매입 2필지 1,655㎡, 보건의료원 증축 841㎡, 미탄 보건지소 신축 부지매입 1,496㎡ 및 건물 신축 1동 337㎡, 이효석기념관 신축 1동 730㎡입니다.

3. 관계법규 및 지침(발췌)

- 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 나.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 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

총괄표 (7 - 1)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m, 천원)

구분			합계			당초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합계	토지	1	3,151	24,606	1	3,151	24,606			
		건물	4	2,074	2513,241	4	2,074	2513,241			
		기타									
	1) 매입	토지	1	3,151	24,606	1	,151	24,606			
		건물									
		기타									
	2) 교환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	토지									
		건물	4	2,074	2513,241	4	2,074	2513,241			
		기타									
처분	합계	토지									
		건물									
		기타									
	1) 매각	토지									
		건물									
		기타									
	2) 교환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	토지									
		건물									
		기타									

2000년도 취득재산목록(7-2)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m, 천원)

번호	재 산 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 득 사유	소유자
	지목	스 재 지	수 량				
합계	토지	3 필지	3,151	24,606			
	건물	5 등	2,074	2513,241			
1-1	철콘	수항리 268-2	83	80,000	하반기	경로당 신축	-
-2	철콘	봉평 유포리	83	80,000	하반기	.	-
2-1	대	여만리 261-28	655	5,339	하반기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전도호
-2	전	여만리 261-16	1,000	5,160	.	.	이영훈
3	철콘	중부리 504	841	894,681	하반기	보건의료원 증축	-
4-1	대	미탄 창리 710	1,496	14,107	상반기	미탄보건지소 부지	전대청
-2	철콘	.	337	458,560	.	신축	-
5	철콘	창동리 산764-1	730	1000,000	하반기	이호석 기념관 신축	

관 계 법 규 (발 취)

지 방 재 정 법

-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② 제①항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② 법 제77조제②항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 (시군의 경우 1억원 이상) --- 예정가격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건물 및 기타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토지에 있어 --- 취득의 경우(1,000㎡ 이상) --- 처분의 경우(1,000㎡ 이상)

공유재산관리조례

- 제7조 (공유재산심의회) ①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

4. 재산의 취득기준

가. 2000년도에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다음의 중요재산이 대상이 된다.

○ 매입, 기부채납, 신축, 증축, 양여취득, 교환, 무상귀속 등

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토지를 우선 취득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하거나 장차 필요한 토지

○ 공유재산의 집단화가 이루어 질수 있는 토지

○ 새로운 개발예정지로서 공공청사 예정지

○ 생산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않은 유휴지

○ 기존 공유재산의 가치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